

獨占規制法에서의 民事的 制裁(2)

저자: 丁相朝

발행년도: 1991

문헌: 司法行政

권호: 370호 (1991년)

출처: 한국사법행정학회

[57]

- _ I. 民事的 制裁의 方法
- _ II. 民事的 制裁의 制限
- _ III. 公正去來委員會의 介入

II. 民事的 制裁의 制限

1. 美國에서의 私的訴訟의 制限

_ 민사적제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점규제법내에서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제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적제재를 원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사적제재가 남용될 위험도 많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와 같이 3배 배상이 허용될 경우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濫訴의 弊害는 심각할 수 있다.

_ 예컨대 3배 배상의 金錢的 誘引으로 인해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많이 제기되는 경우에 피고는 과도한 損害賠償責任額으로 인해서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피고의 생산 및 판매에 쓰여야 할 자본이 지나치게 빈번히 제기되어 오는 訴에 應訴하기 위해서 그 자본의 상당부분이 소비되어야 하는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법원으로서도 계속 제기되어 오는, 그러나 승소가능성은 없지만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訴를 처리하는데 많은 豫算을 浪費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_ 이러한 濫訴의 弊害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 특히 聯邦高等法院의 판례는 여러 가지 기준을 고안해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者, 즉 原告適格을 제한하고 있다.

_ 그 하나의 基準으로서, 因果關係立證의 困難과 二重賠償(Duplicative recoveries)을 방지한다는 근거에서, 문제된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直接的이고 主要한 損害(Direct Injury)가 가해진 자에게만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_ 그 논리적 귀결로써 범위반자와 계약관계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자만이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_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여서, 범위반자와 直接的 去來關係에 있는 자만이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最終 消費者들이 독점규제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제한되었다.주1)

_ 이와 마찬가지로의 논리적 근거에서, 그러나 " 直接的 損害 " 와는 상이한 표현으로, 문제된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특정 産業內의 有效한 競爭秩序가 影響을 받은 경우에 당해 産業內에 있는 자

[58]

(Target Industry Causation)만이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연방고등법원 판례도 있다.주2)

_ 이러한 일련의 판례가 독점규제법의 節次法上的의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本案審理에서 해야할 實體法上的의 保護範圍에 관한 판단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이 문제된 법규정의 保護法益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원고적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주3) 이와 마찬가지로의 근거에서, 연방대법원도 會社引受에 관한 사건에서 배상받고자 하는 손해가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배제·방지되어야 할 종류의 손해, 즉 "獨占規制法上的의 損害(Antitrust injury)"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해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독점규제법상의 3倍 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資格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4) 이러한 일련의 相衝되는 듯한 판례들을 거쳐서, 현재의 지배적인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 直接的 損害, 특정 産業內의 者(Target Industry Causation), 保護法益, 獨占規制法上的의 損害 등과 같은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기준들의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 기준에 따라서 綜合적으로 判斷함으로써, 문제된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3倍 배상 청구의 訴를 提起하기에 가장 適合한 者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二重賠償(Duplicative recoveries)의 위험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 판례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주5)

_ 獨占規制法下에서 손해배상청구의 訴에 있어서

[59]

의 원고적격이 一般 不法行爲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 자격보다 훨씬 엄격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獨占規制法下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3배 배상으로 인한 濫訴의 弊害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적격의 기준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주6)

2. 獨逸에서의 保護法規性

_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國의 獨占規制法은 民事的 制裁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무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가 여러가지 기준을 고안해서 民事적제재의 制限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해서, 獨逸의 競爭制限防止法은 명문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民事적제재를 허용하고 있고 판례는 그 해석에 의해서 具體的인 制限範圍를 찾아가고 있다.

_ 즉, 獨逸의 競爭制限防止法은 모든 종류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 民事적제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로 된 법규정 또는 처분이 他人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것(소위 保護法規 또는 保護處分)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獨逸競爭制限防止法下에서는 어느 법규정 또는 처분이 그러한 보호법규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_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제한 방지법의 實體法規定에 널리 보호법규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民事적제재의 活性化를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반대로 신중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등 많은 이론전개가 있다. 어느 법규정이 명백히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규정에 의해서 자유경쟁질서가 회복됨으로써 반사적으로 특정인 또 특정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당해 법규정이 보호법

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특정인의 권리침해에 해당되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소위 보호법규에 해당된다고 한다.주7)

— 그 전형적인 예로는, 市場支配事業者 등에 의한 보이콧, 妨害行爲, 差別行爲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競爭制限防止法 제26조)을 들 수 있고, 동법회피를 유인하는 共同行爲의 禁止(동법 제25조 2항) 또는 정당한 근거에 의한 카르텔 契約의 解止에 대한 加害行爲의 禁止(동법 제38조 1항 9호)에 관한 규정들도 그러한 보호법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

— 다른 한편, 어느 법규정이 자유경쟁질서라고 하는 경제 전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보호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 市場支配事業者에 의한 支配的 地位의 濫用을 금지하는 법규정(동법 제22조 4항)과 商去來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카르텔의 금지에 관한 규정(동법 제11조 5항 3호 및 제12조 1항 2호)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 보호법규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實質的인 根據의 하나로서 당해 경쟁제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사이의 因果關係와 당해 손해액이 立證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이러한 근거는 특히 最終消費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원용되기 용이할 것이며 濫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美國에서의 私的訴訟에서 原告適格을 制限하는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 改正에 의해서 공정거래

[60]

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제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적제재를 원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에서 검토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現行 獨占規制法下에서 多數의 學說에서와 같이 獨占規制法 違反行爲로 인해서 損害를 입은 者가 공정거래청의 시정조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民法上 一般 不法行爲의 要件을 立證함으로써 곧바로 法院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검토한 미국과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日本의 判例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널리 間接相對方과 最終消費者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주고 있으나주8) 일본 판례의 입장이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쉽게 받아 들일 수는 없다. 특히 가격결정에 관한 共同行爲나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있어서 消費者團體 또는 勞動組合 등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원고적격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인가는 相衝하는 美國 判例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독점규제법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Ⅲ. 公正去來委員會의 介入

— 독점규제법개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제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民事的 制裁를 원용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는 경우에, 公正去來委員會의 措置

들과 法院의 判決들이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독점규제법 適用除外 등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_ 개정에 의해서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부인되는 경우에 독점규제법의 일관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의견을 구하도록 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訴訟節次에 介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에 관한 立法例로 독일과 유럽공동체의 競爭法의 운용을 살펴본다.

1. 獨逸의 競爭制限防止法

_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한편으로는 私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를 통한 민사적제재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보호법규 또는 보호처분의 위반의 경우에 한해서만 민사적제재를 허용함으로써, 보호법규 또는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기준을 통해서, 민사적제재가 경쟁제한 방지법의 범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濫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민사적제재가 카르텔관청에 의한 행정적제재와 相衝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법 목적의 통일되고 일관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경쟁제한방지법은 연방카르텔청장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私的訴訟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주9)

_ 경쟁제한방지법에 관한 모든 소송에 있어서 연방카르텔청장이 公益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의 구성원의 한명을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당해 소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61]

_ 법원은 연방카르텔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당해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연방카르텔청에 제공해 주어야 하고, 연방카르텔청장의 임명을 받은 자는 특히 당해소송에서 當事者, 證人 및 鑑定人을 심문하고 口述 및 書面에 의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_ 연방카르텔청의 구술 및 서면에 의한 이러한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연방카르텔청의 이러한 介入權限은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주10)

2. 유럽 共同體 競爭法

_ 유럽공동체 경쟁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경쟁법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私인이 곧바로 법원에 提訴할 수 있고 會員國의 法院들도 EEC Commission의 事件審理와는 무관하게 공동체 경쟁법위반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나, EEC Commission이 이미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이 EEC Commission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심리를 중지한다.주11)

_ 특히 공동체 경쟁법은 생산 또는 분배를 증진한다거나 기술 또는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협정이나 관행은 공동체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는데주12) 이러한 適用除外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EEC Commission의 전속관할에 속하기 때문에,주13) 회원국법원들도 공동체 競爭法上的 適用除外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EEC Commission의 결정을 기다린다.

3. 公正去來委員會의 性格

_ 公正거래위원회에 민사적제재에 대한 개입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현행 독점규제법하에서의 公正去來委員會의 性格과 權限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_ 즉, 외견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제도가 獨逸과 日本의 제도와 유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한국에 아주 특이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_ 獨逸의 연방카르텔청은 經濟省下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獨立된 權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_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獨占規制法의 執行은 일단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맡겨지고 그 아래에서 公正去來委員會가 實質的인 法執行活動을 하지만 長官은 公正去來委員會에 구속됨이 없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獨立的인 地位에 대해서는 별다른 保護裝置가 없다.

_ 이는 현행 독점규제법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기업통제 및 경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도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_ 그러나 筆者의 소견으로는, 민사적제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정적제재에 있어서의 私人的 節次法的 權利가 강화되는 것이 행정적제재와 민사적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절차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62]

하겠다.

_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 당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등의 행정적 제재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節次法的 權利에 관한 좋은 입법례로서 프랑스의 독점규제위원회는 경제성장관의 사건위촉 또는 職權認知 뿐만 아니라, 문제된 경쟁제한행위에 이해관계를 가진 업자협회, 노동조합, 消費者團體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사건처리에 착수할 수 있다.주14)

_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쟁제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체들에게 독점규제위원회에 積極的으로 接近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위원회가 특정 申請이 理由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유를 밝힌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人的 對象의 節次法的 權利를 간접적으로나마 강화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_ 유럽共同體 競爭法에 있어서도 私人的 節次法的 權利가 확보되어 있다. 즉, 적법한 보호이익을 가진 자는 EEC Commission으로 하여금 유럽공동체경쟁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EC Commission, 정확히 말하면 DG IV(Directorate-General IV 즉 EEC Commission내의 경쟁법담당부)는 유럽공동체경쟁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스스로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적법한 보호이익을 가진 자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도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주15) 私인에 의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EC Commission이 신청기각도 하지 않고 적극적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신청인은 EEC Commission의 不作為가 로마조약상의 직무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共同體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다.주16) 이 경우, 共同

體法院이 EEC Commission에 대신해서 일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私人的 EEC Commission에 대한 절차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주17)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행위를 申告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을 뿐이고,주18)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節次法的 權利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節次法的인 權利부여는 私人參與에 의한 역지적효과의 향상 및 법목적달성에 부응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私人的 청구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일관된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민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1)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431 U.S. 720, 52 L. Ed. 707(1977)에서 피고 Illinois Brick 회사는 벽돌제조회사로서 벽돌을 제조하여 다수의 석조건축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들 석조건축업자들은 다시 현장의 공사업자들에게 당해 벽돌을 재판매하고 이들 공사업자들은 Illinois주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물들에 관한 공사를 인수하였고, Illinois 주정부등은 피고 벽돌제조회사의 부당한 高價의 固定價格으로 인해서 주정부 등의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례를 파기하고 원고와 같이 문제된 경쟁제한행위와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最終消費者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2)

예컨대 Billy Baxter Inc. v. Coca Cola Co., 431 F. 2d 183, 188(2d Cir. 1970)에서 청량음료제조방법을 사용허여해준 licensor, Billy Baxter가 자신의 licensee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피고 Coca Cola 등을 주축으로 해서 청량음료시장 분할협정이 체결되었고 Coca Cola 등을 중심으로 부당염가판매 및 차별가격판매 등의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된 시장분할협정으로 인해서 경쟁 질서가 영향을 받게되는 시장은 청량음료제품시장이므로 음료제조방법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데 불과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licensee로 하여금 원고와의 사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의 행위가 음료제조방법에 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주3)

Malamud v. Sinclair Oil Corp., 521 F. 2d 1142, 1149-50(6th Cir. 1975); Daniel Berger and Roger Bernstein,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titrust Standing," 86

Yale L.J. 809(1977)

주4)

Brunswick Corp. v. Pueblo Bowl-O-Mat, 429 U.S. 477(1977)에서 대형 보울링제조업자인 피고가 보울링경기업체의 일반적인 침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폐쇄직전의 보울링경기장들을 많이 인수하자, 소규모 보울링경기장들이 그러한 引受가 the Clayton Act, Sec. 7(15 U.S.C. Sec. 18)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인해서 야기된 자신들의 사업이익의 감소 즉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Marshall, J. 를 비롯한 만장일치의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3배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상받고자 하는 손해가 경기장 引受라고 하는 Clayton Act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임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원고의 예상 사업이익의 감소라고 하는 손해는 문제된 경기장들이 폐쇄되지 않고 피고에 의해서 인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뿐이고 당해 경기장들이 다른 소규모 신규업자들에 의해서 인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성질의 손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예상사업이익이라는 것은 문제된 경기장들의 자연 폐쇄로 인해서 競争이 減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경쟁질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獨占規制法上的의 損害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5)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Inc. v. California State Council of Carpenters, 74 L Ed 723(1983); Clare Deffense, "A Farewell to Arms;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Based Standing Analysis in Antitrust Treble Damages Actions," 72 Cal. L.Rev, 437(1984)

주6)

Julian O.von Kalinowski, World Law of Competition(New York, Matthew Bender, 1987), Vol, Al, at U.S.1-68

주7)

Jochim Sedemund, " Antitrust law: competitive restraints, " Business Transactions in Germany(Ed. by Bernd Ruster), Vol.3(New York, Mat thew Bender, 1990) at 35-118

주8)

公正取引 제473호(1990. 3) 제20면

주9)

Sec. 90(2), GWB

주10)

Jochim Sedemund, Op.cit., at 35-132

주11)

Julian O.von Kalinowski, World Law of Competition(New York, Matthew Bender, 1987), Overview Volume, at 7-41

주12)

Art, 85(3),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주13)

Art, 9(1), Regulation 17(the First Regulation Implementing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주14)

Art, 52, Ordinance 1483: FR. C-123; 프랑스 독점규제위원회는 1953년에 카르텔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des Ententes)로 창설되었고, 1963년 법률에 의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관할권도 가지게 되었고, 1977년 법률에 의해서 기업집중에 대한 규제도 담당하게 되어서 저자는 이곳에서 간단히 독점규제위원회라고 번역하였다.

주15)

Art. 3, Regulation 17 Implementing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D.Barounos, EEC Antitrust Law(London, Butterworths, 1975) at 282

주16)

Arts. 89 and 175, Rome Treaty

주17)

Jean Guyenot and Charles P. d'Evegnée, European Antitrust law(Paris, Economica, 1976) at 142

주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2항](#)